

제 호

유통연수기관지정서

○ 기 관 명:

○ 소 재 지:

○ 개 설 자

가. 법 인 명:

나. 대표자 성명:

○ 지정 연월일:

위 기관을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
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산업통상부장관

직인